제천시 박달재 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55

제출년월일 : 2007년 월 일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「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7676호, 2005. 8. 4.공포, 2006. 8. 5 시행)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거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법령명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상위법 제정에 따른 법령명 개정
「산림법」 ⇒ 「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」

3. 근 거 법 령 : 붙 임

4. 의 안 전 문 : 붙 임

5. 신 . 구조문 대비표 : 붙 임

첨부 1. 근거법령 1부.
2. 입법예고 사본 1부.

제천시 박달재 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산림법 제32조 내지 제33조"를 "「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법률」 제17조" 로 한다.

제3조의2 제1항중 "산림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"를 "「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법률」"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" 로 한다.

제6조중 "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"를 "「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제2항"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산림법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――――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법률」 제17조 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
제3조의2(휴양림의위탁관리)①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산림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② ~ ⑥ (생 략)	제3조의2(휴양림의위탁관리)①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법률」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6조(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등)①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규정한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② ~ ⑤ (생 략)	제6조(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등)①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제2항――――――――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□ 관계법령

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법률
〔제정 2005. 08. 04일 법률 제7676호〕

제17조(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)①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(자연휴양림 등의 위탁)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. 단체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법률 시행령
〔제정 2006. 08. 04일 대통령령 제19641호〕

제10조(자연휴양림 등의 위탁)법 제22조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. 단체 등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. 단체로서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. 단체를 말한다.
1. 「산림조합법」에 다른 산림조합중앙회
2. 「민법」에 따라 산림문화 · 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4. 독립가 · 임업후계자 ·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실무경험 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

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법률 시행규칙
〔제정 2006. 08. 04일 농림부령 제1536호〕

제16조(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)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또 는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 ·

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.
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 제10호 내지 제14호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경우에 한한다.

1. 국빈 및 그 수행자
2. 외교사절 및 수 수행자
3. 만6세 이하인 자 및 만65세 이상인 자
4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.
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.
6. 「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7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
8. 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시행령」 제12조에해당하는 참전유공자
9.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 ·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
10. 「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림보호 지도원
11. 법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
12.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읍 · 면 · 동에 거주하는 자
13.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자
14.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

③제1항 및 제2항 외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가 각각 정한다.

제천시 공고 제 2007 - 　　호

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07. 05. 16.

제 천 시 장

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취지

○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7676호, 2005. 8. 4공포, 2006. 8. 5 시행)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거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법령명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상위법 제정에 따른 법령명 개정(안)

3. 의견서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06월05일까지 제천시장(참조 산림관리팀장)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652-0910, 641-4814)

○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의견과 그 사유)

○ 성명(단체의경우 단체명과대표자성명) 주소, 전화번호

○ 기타 참고사항등